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16.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201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6. 행정재경위원장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2023. 6. 16.)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재경부위원장 우종혁 의원)

가. 제안이유

-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인 구민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안 제3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비군법」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 예산조치: 논의 필요

○ 조례안 예고: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조성수)

□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발의된 본 조례안은 강남구 구민 중 예비군 훈련장 입소자를 위한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예비군이자, 청년층 구민인 예비군 훈련장 입소자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정시에 예비군 훈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어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음.

□ 본 조례안의 핵심 사항인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제1항1)에 근거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와 국방부 부령인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2)에 의해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 해당 조문 <별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예비군 훈련장 차량지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본 사업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예산편성 시 사업비 반영이 행정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이기에 본 조례안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임.

-
- 1)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2)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제5조 관련)

<p>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유지의 지원 나. 사무실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p> <p>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가. 사무·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 나. 사무실 집기·비품의 지원 다.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p> <p>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 가.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 나.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복지시설 설치의 지원 다.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유지의 지원</p> <p>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 가.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의 지원 1)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 2) 차량·선박의 확보와 인원·물자 수송의 지원 3)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 4)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 5) 개인 장구류 등 장비·물자 확보 및 유지</p>	<p>나. 전투시설의 지원 1) 진지구축 자재·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 2)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 3)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p> <p>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p>
---	--

☞ <별표> 내 4호 중 “수송”은 지역방위 작전과 관련임.

- 또한, 현재 본 사업 관련 부서인 총무과에서 본 예산에 <예비군 육성 지원> 3억25백만원을 편성하여 예비군 육성 지원에 매진하고 있으나, 국방부 법령의 사업범위에 예비군 훈련장 차량지원 사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원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따라서 조례의 근거 없이 예산안을 별도로 추가로 편성하여 지원할 경우, 법령이나 조례상 근거 없는 예산지원이 되어 기부행위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임.
- 소요비용을 추정해 보면, 국방부 훈령인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에 따라 연간 20일(16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시중 전세버스 1일 200km미만 운행 1대 단가가 400천원에서 500천원으로 추정될 수 있어

연간 5대의 버스를 20일간 연중 나누어 운영을 지원한다면, 최대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을 것이나,

* 전세버스 5대 × 20일 × 50만원 = 5,000만원

- 정확한 예산규모는 해당부서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장 간의 협의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제8조 (훈련대상 및 시간) 훈련대상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은 8년차까지로 한다.

2. 훈련시간은 「예비군법」 제6조 및 「병역법」 제49조에 따른 훈련 기간에 실시하고,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예비시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160시간					160시간	
병	1~4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128시간 (132시간)
	5~6년차	동원미지정자				8시간	12시간 (6H×2)		140시간
	7~8년차			미이수 훈련					160시간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132시간
		동원미지정자			2박3일				132시간
	7년차 ~ 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160시간	

- 안 제2조(정의) 중 제1호 “훈련장”의 정의를 “제52사단 제210여단 제3대대”로 규정한 이유는 현재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서초과학예비군 훈련장(강남·서초)”에는 강남구민 중의 예비군만이 아니라, 서초구와 관악구 일부 예비군이 함께 훈련을 받고 있어 강남구민 중 예비군을 대상으로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을 명기하려면 강남구 예비군 부대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참고로, 예비군 훈련 입소 예비군에게 현재 출근 4,000원, 훈련 후 퇴근 4,000원의 교통비가 국방부로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만약 본 조례안이 가결 채택되어 차량운행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자택에서 버스 탑승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로

사용될 정도로 소액이기에 중복지원 논란은 크지 않을 것임.

*현재 서울 택시 기본료는 4,800원임.

- 본 조례안은 시각에 따라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조례안이라 할 것인데, 첫째, 예비군은 국방부가 지원해야 할 사업영역이지만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어 기초지자체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음. 둘째, 예비군은 지역주민인 구민에 해당하여 주민편의를 강남구가 외면할 수 없을 것임. 셋째, 예비군은 다수가 구민 중 청년층에 해당하기에 현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청년층 지원 사업의 성격도 갖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의안 번호	201
----------	-----

제안연월일: 2023. 6. 16.

제안자: 행정재경위원장

1. 제안이유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인 구민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안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예비군법」 및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논의 필요
- 다. 조례안 예고: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0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